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961
----------	-------

발의연월일 : 2025. 12. 5.

발 의 자 : 문금주 · 이훈기 · 권향엽
김 윤 · 조인철 · 박용갑
황정아 · 이병진 · 김남근
장종태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인사청문회는 헌법과 법률에 의한 공직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선출안 등 임명요청안에 대해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공직후보자의 역량, 자질 등을 검증하여 후보자가 임명 요청된 공직에 적합한 인원인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이나 인사청문의 대상의 역량과 자질에 관한 검증 기준이 부재하고, 최근 공직후보자의 공직수행과 관련된 역량이나 자질보다는 공직후보자 또는 그 친족의 사생활에 관한 폭로와 인신공격으로 인해 인사청문의 본래 기능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을 실시하는 경우 위원회로 하여금 공직역량과 공직자질에 관한 인사청문 기준을 수립하도록 하고, 공직후보자 또는 공직후보자의 친족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직후보자가 비공개를 요청한 사항에 관해서는 비공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

도록 하는 등 인사청문회의 공직후보자 역량 및 자질 검증을 강화하고, 공직후보자 및 그 친족에 대한 사생활 침해 등으로 인한 피해를 없애고자 함(안 제4조제3항 신설 등).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하는 인사청문 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직역량: 공직후보자가 공직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역량과 결격사유에 관한 사항
2. 공직자질: 공직후보자가 공직을 수행함에 있어 갖추어야 할 도덕적 자질 및 결격 사유에 관한 사항

제1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공직후보자 또는 공직후보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직후보자가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공개로 실시한다.

③ 제2항의 비공개 요청은 인사청문회 개최 5일 전까지 위원회에 비공개 요청 사항과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비공개 인사청문회의 결과에 관하여 위원회는 인사청문 결과 적격의 가부를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

개 인사청문 결과의 세부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제1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 및 사무보조자는 제14조 제2항에 따라 공직후보자가 비공개를 요청한 사생활에 관한 사항으로서 인사청문을 통하여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임명동의안등의 심사 또는 인사청문) ①·② (생략) <u><신설></u>	제4조(임명동의안등의 심사 또는 인사청문) ①·② (현행과 같음) <u>③ 위원회는 제1항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하는 인사청문 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u> <u>1. 공직역량: 공직후보자가 공직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역량과 결격사유에 관한 사항</u> <u>2. 공직자질: 공직후보자가 공직을 수행함에 있어 갖추어야 할 도덕적 자질 및 결격 사유에 관한 사항</u>
제14조(인사청문회의 공개) (생략) <u><신설></u>	제14조(인사청문회의 공개)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u>② 공직후보자 또는 공직후보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직후보자가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공개로 실시한다.</u> <u>③ 제2항의 비공개 요청은 인사</u>
<u><신설></u>	

<u><신 설></u>	<u>청문회 개최 5일 전까지 위원회에 비공개 요청 사항과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u> <u>④ 제2항에 따른 비공개 인사청문회의 결과에 관하여 위원회는 인사청문 결과 적격의 가부를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 인사청문 결과의 세부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u>
제18조(주의의무) ①·② (생략) <u><신 설></u>	제18조(주의의무) ①·② (현행과 같음) <u>③ 위원 및 사무보조자는 제14조 제2항에 따라 공직후보자가 비공개를 요청한 사생활에 관한 사항으로서 인사청문을 통하여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u>